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5. 8. 28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8월 14일

나. 발의자: 양송이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양송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을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례의 법령에 대한 체계적 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사용료 50% 감면 대상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대상을 추가함(안 제9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)

○ 기존에 사용료 30% 감면 대상이었던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을 삭제함(현행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삭제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 사고·질환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·군인·경찰 등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제정 후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함께 보훈 체계를 개편하여 각 대상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구분하여 제도화하고 있음.

- 2023년에는 문화·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이 있었음.
-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기준에 사용료 30% 감면 대상이었던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안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삭제하고,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용료 50% 감면 대상으로 안 제9조제2항제1호에 신설함.

### ○ 검토 결과
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하여 고궁과 공원 등(공공체육시설 포함)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(2023.1.17.) 되었음.
- 대상 시설 및 감면율은 동법 시행령 별표 9의2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요금에 대해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 혜택 대상자로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에 의거 “보훈보상대상자”와 더불어 “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(지원 공상군경)” 등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함.
- 우리 구(區) 현행 조례에서는 “보훈보상대상자”에 대하여 30% 감면만 규정되어 있는 바,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△기준에 30% 감면 대상이었던 “보훈보상대상자”를 50% 감면 대상으로 변경하며, △이용료 감면 대상에 현행 「보훈보상자법 시행령」을 준용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(지원 공상군경)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.
- 이들은 대부분이 군인, 경찰, 소방공무원 등으로 재해나 직무수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이므로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측면에서 지원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체육시설 감면 대상 확대로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양송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70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8. .

발의자: 양송이、신흥식、이성수  
김지연、정선희 의원  
(5인)

### 1. 제안이유

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을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례의 법령에 대한 체계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50% 감면 대상에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대상을 추가함(안 제9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)

나. 기존에 사용료 30% 감면 대상이었던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을 삭제함(현행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삭제)

#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4,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.

카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50% 감면</p> <p>    가. ~ 차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30% 감면</p> <p>    가. ~ 다. (생 략)</p> <p>    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</p> <p>    마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    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카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2. -----</p> <p>    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    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